

부산광역시사하구구보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1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11. 20.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“내고장사하” 구보편집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에 대하여 조례의 실비변상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, 복리후생비 등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지급해 왔으나, 정부의 공무원 봉급 삭감조치로 “체력단련비”가 없어지고 “가계지원비”가 신설되므로써,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는 상임위원의 실비변상 기준에 명시된 “체력단련비”를 “가계지원비”로 변경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구보편집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기준표상의 “체력단련비” 항목을 “가계지원비”로 변경

3. 참고사항

‘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보완사항(’99. 7. 28. 행정자치부)

부산광역시사하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구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 표] 실비변상기준 중 “체력단련비”를 “가계지원비”로 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	
[별 표]		[별 표]	
실비변상기준		실비변상기준	
구 분	상 임 위 원	구 분	상 임 위 원
(생 략)	(생 략)	(현행과같음)	(현행과같음)
<u>체력단련비</u>	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<u>체력단련비</u> 지급기준에 준한금액	<u>가계지원비</u>	----- <u>가계지원비</u> ----- -----
(생 략)	(생 략)	(현행과같음)	(현행과같음)